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2

2019. 3. 15.(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9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2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3월 11일

-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사유

○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 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안 제7조)

○ 독립운동 유적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사업의 지원(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5조에서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 둘째, 안 제6조에서는 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 넷째, 안 제9조에서는 독립운동 유적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조례안은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을 규정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송미애 의원 등 9인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 송미애,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이옥규, 정상교, 김기창, 박형용, 서동학

1. 제안 이유

○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 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안 제7조)

○ 독립운동 유적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사업의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17.(10일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을 통해 도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을 이루어 낸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장소 또는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3.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은 독립운동 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까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시·군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운동 유적 선정 기준 및 조사와 보존에 관한 계획
2.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과 조형물 등 설치 계획
3. 독립운동 유적 발굴과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분석
2. 도내 역사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고증을 위한 공동연구
3. 역사적 가치 판정과 유적의 보존 결정 등
4. 표지석 및 조형물 등의 설치, 유적 보존방법 등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유적 보존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의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설치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예술과장 김 연 준